리스크관리규정

제 정 2006. 11. 17 개 정(1) 2009. 10. 14 개 정(2) 2014. 5. 29 개 정(3) 2016. 9. 27 개 정(4) 2020. 9. 2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투자공사(이하 "공사" 라고 한다)가 고유자산 및 위탁자산 운용업무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시장, 신용, 유동성, 운영, 법률리스크로 분류하고 이를 관리 및 통제하기 위한 제반 조직과 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리스크의 종류 및 정의) 공사에서 관리하는 리스크의 종류 및 정의는 다음 과 같다.
 - ① "시장리스크"라 함은 주가, 금리, 환율 등 금융시장요인의 변동으로 미래의 자산가치가 감소하는 리스크를 말한다.
 - ② "신용리스크"라 함은 고유 또는 위탁자산의 투자대상(발행자)이나 거래상대 방이 자기 또는 제3자에 대한 상환의무 및 결제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신용등급의 하락으로 인해 미래의 자산가치가 감소하는 리스크를 말한다.
 - ③ "유동성리스크"라 함은 예기치 않은 자금의 유출 등으로 지급불능위험에 직면하거나, 자금부족해소를 위해 보유 유가증권의 불리한 매각 등으로 손실을 입게될 리스크를 말한다.
 - ④ "운영리스크"라 함은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내부의 절차, 인력, 시스템 및 외부사건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의한 리스크를 말한다.
 - ⑤ "법률리스크"라 함은 관련법규, 계약, 지침 및 가이드라인 등의 불이행, 부당거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분쟁, 소송에서 패소할 리스크를 말한다.
- 제3조(리스크관리 적용범위 및 실행원칙) ①본 규정은 공사의 고유 및 위탁자산운 용관련 제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위탁기관이 자산위탁계약에서 정한 사

항은 본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②자산운용상의 리스크 허용수준은 위탁자금의 성격 및 전략에 부합되게 결정되어야 하며 결정된 허용수준에 따라 운용 및 손실한도 설정 등을 구체화 한다.
- ③자산운용 성과는 리스크를 반영하여 측정·평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④리스크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 시스템 및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킨다.
- ⑤리스크관리에 관한 보고 및 통보는 반드시 서면 또는 이메일을 포함한 시스템을 활용하여 수행한다.

제4조(리스크관리 대상) 본 규정에 의한 리스크관리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고유자산 운용에 수반되는 리스크
- 2. 위탁자산 운용에 수반되는 리스크
- 3. 기타 공사운영 전반에 걸친 리스크

제2장 리스크관리조직 및 체계

- 제5조(운영위원회의 권한 및 책임) 리스크관리 정책의 최종 결정은 운영위원회가 담당하며, 운영위원회 산하에 리스크관리소위원회를 심의기구로 두어 리스크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점검 및 필요사항을 의결한다. 운영위원회 및 리스크관리소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규정」 및 「소위원회 운영세칙」을 따른다.
- 제6조(이사회의 권한 및 책임) 이사회는 「투자정책서」에서 정한 바와 같이 「리 스크관리가이드라인」을 심의, 승인한다.
- 제7조(리스크관리전문위원회의 권한 및 책임) 리스크관리의 심의기구로 리스크관 리전문위원회를 두고, 리스크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한다. 리스크관리전문위 원회의 구성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은 별도 「리스크관리전문위원회 시행세칙」을 따른다.
- 제8조(리스크관리조직의 권한 및 책임) ①투자관리부문은 운용조직과 별도의 조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제반 리스크의 측정, 통제, 보고 등 리스크관리의 총괄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 ②리스크관리조직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제2조에서 정한 리스크의 종류에 의거하여 리스크관리업무를 구분하고, 세부 업무절차는 업무분장세칙 및 직무전결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1. 리스크관리담당부서는 리스크관리소위원회 및 리스크관리전문위원회의 간사업무를 수행하며 공사 리스크관리에 대한 총괄기능을 수행한다.
- 2. 리스크관리담당부서는 시장리스크, 신용리스크, 유동성리스크의 종합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 3. 준법감시 및 법무담당부서는 법무관련 자문 및 법규 내지 약관 등의 위반을 감독 시정조치하는 법률리스크 관리업무와 운영리스크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 4. 그밖에 외부자산운용사 및 대체자산위탁운용사에 대한 가이드라인 준수 및 모니터링은 투자운용담당부서와 리스크관리담당부서가 각각 독립적으로 담당하 고 위반사항 발생시 즉시 준법감시담당부서, 리스크관리담당부서, 투자운용담당 부서에 보고하도록 한다.
- ③리스크관리조직은 본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 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부서는 그 요청에 성 실하게 응해야 한다.
- ④리스크관리조직은 「리스크관리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특정 자산에의 과도한 투자 및 부외거래, 부당한 계약, 기타 공사의 재산과 경영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한 통제·조정 권한을 갖는다.
- 제9조(리스크관리조직의 합의요구) 공사 투자관리부문은 「직무전결규정」에 따라 제2조의 리스크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게 리스크관련 규정 및 시행 세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전합의를 요구할 수 있다.
- 제10조(리스크관리조직의 회의주관 및 참석) 리스크관리조직은 리스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고 관련부서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리스크관리와 관련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 제11조(리스크요소의 모니터링 및 보고) ①리스크관리조직은 제2조에 명시된 리스크를 항시 모니터링하고, 리스크관리규정을 시장 및 기타 경영환경변화에 부합되도록 수정, 보완해야 한다.
 - ②리스크관리담당부서는 리스크관리현황 및 리스크 노출정도를 월별로 투자관리 부문장에게 보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리스크관리담당부서는 종합적인 리스크관리 현황에 대하여 반기별로 운영위원

회에 보고함을 워칙으로 한다.

④위탁자산 운영시 「리스크관리가이드라인」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위탁자산 리스크관리 시행세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함과 동시에 해당 투자운용담 당부서에 통보한다.

제3장 고유자산의 리스크관리

제12조(고유자산리스크관리) 고유자산의 운용과 리스크관리에 대한 사항은 「고유 자산운용규정」을 따른다.

제4장 위탁자산의 리스크관리

- 제13조(시장리스크 관리) ①시장리스크 관리대상은 제2조 제1항에서 정의한 시장 리스크를 포함하는 자산을 대상으로 한다.
 - ②시장리스크관리는 리스크관리담당부서에서 담당하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1. 리스크관리 관련 운용 프로세스와 한도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업무
 - 2. 위탁자산에 대한 시장리스크 측정, 관찰, 관리, 분석, 보고
 - 3. 운용담당자의 「리스크관리가이드라인」 및 한도준수 등의 이행여부 점검 및 보고
 - 4. 시장리스크에 관한 사안의 리스크관리 관련 각종 위원회 보고 및 부의
 - ③시장리스크 관리를 위한 자산별 운용프로세스 및 한도를 별도로 수립하여 운용할 수 있으며, 동 운용 프로세스 및 한도의 제정과 개정은 리스크관리전문위 원회에서 심의한다.
- 제14조(신용리스크 관리) ①신용리스크 관리대상은 제2조 제2항에서 정의한 신용리스크를 포함하는 자산을 대상으로 한다.
 - ②신용리스크 관리는 리스크관리담당부서가 담당하며 투자운용부서와 협의하여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1. 거래상대방을 포함한 신용리스크관련 가이드라인 및 업무지침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업무

- 2. 위탁자산에 대한 신용리스크 측정, 관찰, 관리, 분석, 보고
- 3. 운용담당자의 「리스크관리가이드라인」의 지침 및 각종 한도 준수 등의 이행 여부 점검 및 보고
- 4. 신용리스크에 관한 사안의 리스크관리 관련 각종 위원회 보고 및 부의
- **제15조(유동성리스크 관리)** ①유동성리스크는 이례적으로 불리한 시장환경하에서 투자자산의 포지션을 청산할 경우를 감안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②위탁자산 운용의 경우 위탁자가 요구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유동성을 관리하되, 관련 유동성리스크관리는 리스크관리담당부서가 담당한다.
 - ③위탁자산의 성격 및 위탁기관의 목적에 따라 유동성관리가 필요할 경우 별도의 유동성리스크 관리지침을 제정하여 관리한다.
- 제16조(운영리스크 관리) ①운영리스크 관리대상은 제2조 제4항의 정의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 ②운영리스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운용, 평가, 지원부서를 분리할 수 있다.
 - ③위탁자산운용과 관련된 사무처리는 제규정 및 지침에 따라야 한다.
- **제17조(법률리스크 관리)** ①법률리스크 관리대상은 제2조 제5항의 정의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 ②투자거래 및 투자거래문서와 관련한 제반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는 준법감시 및 법무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 제18조(파생상품에 대한 리스크관리) ①파생상품에 대한 리스크 관리대상은 이자율관련, 주가관련, 환율관련, 신용관련, 상품관련 파생상품 및 구조화증권 등으로 구분한다.
 - ②운용한도 및 세부 관리사항은 「위탁자산 리스크관리 시행세칙」에서 정한다.

부 칙(제정)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06년 11월 17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1)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09년 10월 14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4년 5월 29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3)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6년 9월 27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4)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20년 9월 29일 부터 시행한다.